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3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 김선교 • 이상휘 • 김위상

김상훈 · 김성원 · 구자근

김석기 · 송석준 · 김소희

윤상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신고 후에 동일한 시설에 대해 경비기 간의 단절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가 불분명한 측면 이 있음.

이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계약을 갱신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② (생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	③		
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계약을		
	<u> 갱신한 때</u>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